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

의안 번호	2019~129

제출일자 : 2019. 11. .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❍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,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지원함.

기획시)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❍ 근거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 152조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❍ 대 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(대표 공석)
❍ 사 업 비 : 4,038천원
-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

사업기간	2018년 예산액	2019년 요구액*	재 원 별				
			계	지 특	도 비	군 비	기 타
2020년	4,012	4,038	4,038			4,038	

- 산출기초 : '18년 결산 보통세 26,925,021천원 × 1.5/10,000
= 4,038천원

❍ 사업내용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-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나. 부서의견

❍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, 수입·지출 결산은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,
❍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네트워크포럼 운영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,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3. 관련법규 및 조례

❍ 지방세기본법 제152조,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

4. 참고사항

❍ 관계 법령 : 붙임 1
❍ 출연기관 현황 : 붙임 2
❍ 기타 참고자료(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) : 붙임 3

관 계 법 령

지방세기본법

[시행 2019. 1. 1.] [법률 제16039호, 2018. 12. 24., 일부개정]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
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[시행 2019. 7. 1.] [대통령령 제29849호, 2019. 6. 11., 타법개정]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5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【 출연기관 현황 】

한국지방세연구원

<table>
<tr><td>설립근거</td><td colspan="3">법 률 :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내지 제152조
시행령 :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</td><td>전화번호 : 02-2071-2798
홈페이지 : www.kilf.re.kr</td></tr>
<tr><td>주요연혁</td><td colspan="2">- 2011.2 설립등기
- 2011.4 개원</td><td>기관형태
(출자, 출연)</td><td>- 출연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인원현황
('19. 6 현재)</td><td colspan="2">계</td><td>정규직</td><td>비정규직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65명(11명)</td><td>65명 (11명)</td><td>-</td></tr>
<tr><td rowspan="16">임 원
('19. 6 현재)</td><td>직 책
(직책명)</td><td>성 명</td><td>주요경력</td><td>임 기</td></tr>
<tr><td>이 사 장</td><td>허 ○ ○</td><td>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</td><td>2017.12. 22. ~ 2020.12. 21.</td></tr>
<tr><td>부이사장</td><td>황 ○ ○</td><td>충청남도 논산시장</td><td>2019. 2. 28. ~ 2020. 2. 27.</td></tr>
<tr><td>원 장</td><td>공 석</td><td>한국지방세연구원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 ○ ○</td><td>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○ ○</td><td>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</td><td>2019. 2. 28.~2020. 2. 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이 ○ ○</td><td>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</td><td>2019. 2. 28.~2020. 2. 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○ ○</td><td>경기도 자치행정국장</td><td>2019. 2. 28.~2020. 2. 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○ ○</td><td>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</td><td>2019. 2. 28.~2020. 2. 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박 ○ ○</td><td>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</td><td>2019. 2. 28.~2020. 2. 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김 ○ ○</td><td>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</td><td>2019. 2. 28.~2020. 2. 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윤 ○ ○</td><td>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</td><td>2019. 2. 28.~2020. 2. 27</td></tr>
<tr><td>이 사</td><td>금 ○ ○</td><td>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</td><td>2019. 2. 28.~2020. 2. 27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김 ○ ○</td><td>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</td><td>당 연 직</td></tr>
<tr><td>감 사</td><td>노 ○ ○</td><td>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</td><td>2018. 2. 28.~2020. 2. 27</td></tr>
<tr><td>주요기능</td><td colspan="4">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설립자본금
(단위:백만원)</td><td colspan="2">1
(직전연도말 기준)</td><td>출자・출연액
(단위:백만원)</td><td>68,756
(2011~2019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최근 3년간
예산 현황
(단위:백만원)</td><td>연도</td><td>2017</td><td>2018</td><td>2019</td><td rowspan="4">재무현황
(백만원)
'18.12.31기준</td><td></td></tr>
<tr><td>예산액</td><td>9,986</td><td>13,719</td><td>13,164</td><td>자산</td><td>18,188
(자산 총액)</td></tr>
<tr><td>지자체
지원액</td><td>7,570</td><td>12,102</td><td>10,844</td><td>부채</td><td>4,456
(부채 총액)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자본</td><td>13,732
(자본금 총액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경영성과
(단위:백만원)
'18.12.31기준</td><td colspan="3">총수익</td><td>총비용</td><td>당기순이익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11,166</td><td>8,603</td><td>2,563</td></tr>
</table>

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

한국지방세연구원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심의를 위한 관련자료 송부

1. 귀 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동의안 심의 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사전심의 참고자료 1부2. (부록)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연구원 성과산정기준 1부. 끝.

한국지방세연구원장

수신자 지자체 243

주임	대리	경영지원실장	부원장	전결 2019. 6. 18.

협조자

시행 경영지원실-1378 (2019. 6. 18.) 접수 재무과-17036 (2019. 6. 18.)

우 0678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한국지방세연구원 / http://www.kilf.re.kr

전화번호 02-2071-2726 팩스번호 02-2071-2722 / ouj900906@kilf.re.kr / 대국민 공개

"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"

경 상 남 도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

1.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972(2019. 9. 9.)호와 관련됩니다.

2.「지방세기본법」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확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시·군에서는 2020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없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20년 출연금 집계표 1부. 끝.

경 상 남 도 지 사

수신자 창원시장(세정과장), 진주시장(세무과장), 통영시장(세무과장), 사천시장(세무과장), 김해시장(세무과장), 밀양시장(세무과장), 거제시장(세무과장), 양산시장(세무과장), 의령군수(재무과장), 함안군수(세무회계과장), 창녕군수(재무과장), 고성군수(재무과장), 남해군수(재무과장), 하동군수(재정관리과장), 산청군수(재무과장), 함양군수(재무과장), 거창군수(재무과장), 합천군수(재무과장)

주무관	세정담당	세정과장	전결 2019. 9. 9.
협조자			

시행 세정과-11414 (2019. 9. 9.) 접수 재무과-25795 (2019. 9. 11.)

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, (사림동) / http://gyeongnam.go.kr

전화번호 055-211-3717 팩스번호 055-211-3719 / ysjliy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온라인으로 문서제출 "문서24"